

**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**인천광역시의회**

#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1. 2.23.  
발 의 자 : 이재병 의원  
(찬성자 8인)

## 1. 의결주문

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도서관을 이용하는 취업준비자, 수험생, 일반인 등을 위해 휴관일을 축소하고 도서관 개방을 확대하여 더 많은 학습과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도서관 휴관일과 개방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4조)

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추석 연휴와 설 연휴, 관장이 정하는 월 두 번의 정기휴관일 그리고 특별한 사유로 관장이 지정한 임시휴관일을 제외하고 도서관은 개방하도록 규정함. (안 제4조)

나.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. (부칙)

예산 확보 등 준비기간 부여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2011년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

다. 합 의 : 교육청 소관 도서관과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합의 되었음

라. 기 타 :

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(2) 비용추계서 별첨

##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이용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,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개관)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. 다만,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.

1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 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날
2. 관장이 정하는 매월 두 번의 정기휴관일
3.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관장이 지정하는 임시휴관일

### 부칙

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이용조례	<u>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이용 조례</u>
<신 설>	<p>제4조(개관)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. 다만,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 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날</li> <li>2. 관장이 정하는 매월 두 번의 정기휴관일</li> <li>3.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관장이 지정하는 임시휴관일</li> </ol>
<u>제4조 (생략)</u>	<u>제5조 (현행 제4조와 같음)</u>
<u>제5조 (생략)</u>	<u>제6조 (현행 제5조와 같음).</u>
<u>제6조 (생략)</u>	<u>제7조 (현행 제6조와 같음)</u>

##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
관계법령	<input type="checkbox"/> 도서관법 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# 관계법령 발취사항

## 【도서관법】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 비 용 추 계 서

## 1. 재정수반요인

- 도서관 개방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해인원 충원 및 청사관리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.

## 2.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규정

-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

## 3. 비용추계 요약

● **소요예산 : 435,488천원**

○ 산출내역

연 간 운영비 : **54,436천원 × 8개 도서관 = 435,488천원**

⇒ 비정규직 사서 1명, 청사관리 용역비 증가

○ 연간 운영비 산출근거(1개 도서관 기준, 세부내역 별첨)

구분	소요예산(천원)		추가소요 예산 (1개도서관)	비고
	현행	열람실 개방		
비정규직 사서 인건비	37,771	56,656	<b>18,885</b>	1명 증
공공요금 등	116,200	116,200	<b>10,000</b>	
청사관리 용역비	219,007	244,559	<b>25,551</b>	연장운영에 따른 추가비용
계	<b>372,978</b>	<b>417,415</b>	<b>54,436</b>	

## 4. 작 성 자

- 기획행정위원회 이 재 병 의원



● 연간 운영비 세부산출근거(1개 도서관 기준)

구분	소요예산(원)		추가 소요예산
	현행	열람실 개방	
비정규직 사서 인건비 (열람지도)	- 일용직 연봉액 : 15,437,100원×2명=30,874,200원  - 연차수당 : 42,290원×2명×15일=1,268,700  - 퇴직금 : 1,286,430+52,860×2명=2,678,580 - 사회보험 : 2,949,200	- 일용직 연봉액 :15,437,100원×3명=46,311,300원  - 연차수당 : 42,290원×3명×15일=1,903,050  - 퇴직금 : 1,286,430+52,860×3명=4,017,870 - 사회보험 : 4,423,800	<b>1명 증</b>
소계	37,770,680(2명)	56,656,020(3명)	<b>18,885,000</b>
청사관리 용역비	- 청사관리(300일) : 18,250,650×12월=219,007,800	- 청사관리 용역비 : <b>244,558,500(335일)</b> 산출식: 기존 1일단가 : 219,007,800 ÷ 300 = 730,020원 추가일수 : 730,020 × 35일 = 25,551,700원	<b>25,551,000</b>
공공요금 등	116,200,000 (2009년 납부액)	126,200,000	<b>10,000,000</b>
계	<b>372,979,000</b>	<b>427,415,000</b>	<b>54,436,000</b>